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신설 2024. 7. 1.>

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6일

신청인	상호(명칭)	
	대표자(성명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 (전화번호:)	
사업의 종류 (모두표기)	[] 검수사업 [] 검량사업 [] 항만용역업(줄잡이) [] 항만용역업(통선) [] 항만용역업(선박 청소) [] 항만용역업(선박 소독) [] 항만용역업(선박 칠)	[] 감정사업 [] 항만용역업(화물 고정) [] 항만용역업(선박 경비) [] 항만용역업(오물 제거) [] 항만용역업(폐기물 수집·운반) [] 항만용역업(맑은 물 공급) [] 기타
자본금		
항만명(사업구역)		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
시·도지사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재산 상태를 기재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·확인	→	결과통지
신청인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		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·도